

## 직장방위협의회의규정

(제정 1992. 10. 6.)

**제1조(목적)** 이 규정은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10조,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4조3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3에 의하여 설치된 전주대학교(이하 “본교”라 한다) 직장방위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10.6.17>

**제2조(명칭)** 이 위원회는 직장방위협의회(이하 “협의회”)라 한다.

**제3조(구성)** 협의회 위원은 총장, 본부장, 처장, 각 학장 및 각 대학원장으로 하며,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총 20인 이내의 범위 내에서 위원을 임명할 수 있다. <개정 2017.9.1.>

**제4조(의장)** 협의회 의장은 총장이 되며, 유고시는 총무처장이 된다.

**제5조(심의사항)**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전시사변, 기타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하에서 학교방위 대책과 지원에 관한 사항 <신설 2010.6.17>
2. 직장예비군 및 민방위대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<개정 2010.6.17>
3. 직장예비군 및 민방위대의 교육훈련 지원에 관한 사항 <개정 2010.6.17>
4. 그 밖에 직장예비군 및 민방위대의 지원·발전에 관한 사항 <개정 2010.6.17>

**제6조(회의)** 협의회 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,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최하고,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**제7조(회의록)** 회의록은 별도 작성하지 아니하며 필요시 공문서식으로 결재를 득한다.

**제8조(간사)** 협의회회의는 총무처에서 주관하며, 예비군연대장이 간사가 된다. <개정 2012.5.18>

부 칙

이 규정은 1992년 10월 6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1999년 12월 14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00년 11월 14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02년 8월 14일부터 시행한다.

4-0-11-2 직장방위협의회규정

이 규정은 2003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. 부 칙

이 규정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 부 칙

이 규정은 2010년 6월 17일부터 시행한다. 부 칙

이 규정은 2012년 5월 18일부터 시행한다. 부 칙

이 규정은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 부 칙